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6102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박기범, 이예슬, 최건

피 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8.

주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4,152,9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52,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D에게 30,000,000원을 약정이율 10.3%, 연체이율 17.3%, 만기일 2019. 8. 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그런데 D이 만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11. 26.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33,671,27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D은 2007. 10.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는데, 2018. 11. 28. 계약자를 아들인 피고(2005년생, 당시 만 13세)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계약의 계약자도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위 계약자 변경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이 해약될 경우 보험계약 대출금 2,411,967원을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14,152,963원이다(이하 ‘위 계약자 변경’을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라. D은 이 사건 계약자 변경과 같은 날인 2018. 11. 28. 이 사건 보험과 별개로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던 증권번호 E, 상품명 ‘F’라는 보험계약은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으로 8,030,137원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그 배우자인 C도 동행하였다(원고의 2020. 11. 16.자 참고자료, 2021. 1. 6.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등 참조).

마. 피고는 2018. 12. 4.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14,107,541원을 이체받았다가 2018. 12. 6.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을 그대로 송금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유지시켰고, 최종적으로 2020. 1. 28.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약하여 보험계약 대출금 2,407,672원을 공제하고 16,235,974원을 환급받았다.

바.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D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적극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한편,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가항 채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무자력 상태인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도록 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은 D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자 변경 이후 보험료 추가 납부 등의 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의 수액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일 기준으로 D이 환급받을 수 있었던 해약환급금의 수액인 14,152,9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D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D의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도 그 당시에 그로 인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그 부모인 D과 C가 2018. 5. 2.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C가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② D이 약속과 달리 2018. 11.경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자, ③ 원고 담당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약환급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보험을 살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④ D이 수령해 간 해약환급금을 C의 돈으로 다시 입금시켜 이 사건 보험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이 사건 계약자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자 변경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을 D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D과 C 사이에 피고의 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과 C는 이 사건 계약자 변경보다 6개월가량 앞서 2018. 5. 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호협12호로 이혼 의사, 미성년자녀인 피고에 대한 C의 양육, 그리고 D의 C에 대한 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확인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내지 ④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에 앞서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으로부터 일주일가량 뒤인 2018. 12. 4.경 변경된 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자신의 계좌로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가 2018. 12. 4.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가 이틀 뒤인 2018. 12. 6. 다시 이 사건 보험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시키기 위하여 반환한 해약환급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돈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틀 전에 수령하였던 해약환급금 그대로를 다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인 점, 이 사건 계약자 변경 이후 피고가 위 약관대출원리금을 승계하여 일부 이자를 납부하여 오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보다 현재의 해약환급금이 증액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에서 그 당시 보험약관 대출원리금 2,411,967원 상당의 선급금을 공제한 잔액, 즉 14,152,963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2. 17. 선고 2009가단9785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은 14,152,9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152,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별지

목록

순번	증권번호	현재 보험계약자	계약일	계약자변경일	총지급금	상환명
1			2007. 10. 29.	2018. 11. 28.	14,152,963원	